

제438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13일(목)

장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1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4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05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46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4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28)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34)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500)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250)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65)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19)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2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23.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2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2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26.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4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4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13) 4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4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40) 4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8) 4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056) 4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4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460)	4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4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4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4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42)	4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28)	4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34)	4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500)	4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250)	4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65)	4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19)	4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5
2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5
23.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5
2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5
2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5
26.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5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09)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1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40)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056)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460)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42)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28)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34)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500)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250)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65)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19)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2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23.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2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2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26.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박지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안녕하십니까?

소위원회 위원장 박지혜 위원입니다.

2년 전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탄소중립 기본법의 감축 경로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 기후특위는 작년 3월 13일 구성되어 지난 17개월간 전체 회의 13회, 탄소중립기본법안소위 8회 등을 개최하여 오늘 관련 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2일과 8월 1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제22대 전반기 기후특위의 법안 심사 논의 내용, 입법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 및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4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혜경 의원, 서왕진 의원, 이재관 의원, 이소영 의원, 차지호 의원, 윤준병 의원, 김위상 의원, 김중민 의원, 정을호·정혜경 의원, 김소희 의원, 위성곤 의원, 이종배 의원, 최혁진 의원 및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19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라는 법정 감축 경로를 2018년 대비 수치로 법률에 명시했고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는 그 하한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중장기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명에서 20

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일정한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우리나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분석·예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을 위하여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녹색채권 발행 지원, 공공금융 지원, 금융회사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녹색경제·녹색산업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면서 이 법의 목적을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 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공개하도록 하고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활용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법 조문을 이관하여 본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 및 진척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소관 행정계획 수립 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기후보험의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산업의 육성,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장기 감축 경로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본법 의결을 하게 됩니다. 본 법안이 기후시민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의한 저조차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결될 장기 감축 경로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안 의결이 끝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경로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2040년과 45년 앞으로는 법이 정한 범위의 하한이 아닌 상한에, 나아가 그보다 더 높은 감축 경로를 따라서 2050년 탄소중립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토론 순서입니다.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 있는데요. 순서를 서왕진, 이소영, 정혜경 이런 순서로 하고 또 김소희 위원님도 신청하셨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3분이면 됩니다.

○정혜경 위원 5분이요.

○위원장 김정호 3분으로 하되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왕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서왕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 소위가 의결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도, 미래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3일 청년단체인 케이팝포플래닛이라는 단체가 저희 의원실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교사, 청년노동자 또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약 2만 명으로부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 감축이 절실하다라는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제게 하신 말씀을 짧게 옮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미래세대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루지 않는 조기 감축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담길 감축목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저희 청년세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현실입니다. 저희 미래 30년이 지금 위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후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과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협하는 당면한 현실입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소 감축의 무거운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국회가 실질적인 감축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회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공론화 시민대표단은 국제적 수준 이상의 감축목표와 조기 감축경로에 압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안소위에서는 감축경로를 범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앞에 소개했습니다. 다만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 84~90으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형 목표는 하한만 달성해도 법정 목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

한선은 아무런 규범력을 갖지 못하고 범위형 목표 전체가 하한선, 즉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로 고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의 규제 적용 기준을 하한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한인 선형 경로는 초기 감축 노력을 줄이고 나중에 부담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만여 명의 시민이, 그것도 아직 투표권조차 없는 청소년들까지 나서서 이 법안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후특위가 출범한 이유,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의안은 그 출범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또다시 이번에도 어른들이 청구서를 밀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법안소위 의결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전달된 청원, 시민들의 목소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법안의 소위 논의 과정에 보다 책임 있는 감축경로를 관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재 판결과 공론화 결론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에 부합하는 새로운 감축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전개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먼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일방처리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그 합의의 내용이 현재 결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인지는 저로서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기록에 남겨 두고 싶습니다.

오늘 통과되는 안에서는 앞서 서왕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35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으로 별도로 정하고 실효적 규제는 하한에만 연동을 시켜서 상한은 선언적 의미만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기념비적인 현재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법정에 서고 싸워 왔던 기후 소송,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보기에는 비겁하고 기만적인 목표 설정 방식일 수 있습니다. 기후시민들은 상한을 바라보게 하고 정부는 하한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이 애매한 동상이몽식 목표를 국회가 용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견 범위가 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기후 목표를 단독 처리하는 것이 추후에 책임 있는 이행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미 시한을 넘긴 입법 의무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이유로 뼈아픈 절충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목표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4년 뒤에 203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뒤의 목표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부로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는 쉼표를 찍게 되지만 내일부터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앞에 놓인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본 위원은 이 개정안이 기후대응의 절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므로 의결에 반대합니다.

지금 국민은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사람이 쓰러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바다에서는 오리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폭염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은 기후재난이라고 하면서 왜 탄소 감축은 이렇게 미온적합니까?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범위형 경로라는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적인 안입니다. 8조 제3항은 2035년 이후의 목표를 하한과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했습니다.

상한선은 마치 초기에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하는 것처럼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 즉 배출권거래제 등 실제 규제에 적용되는 기준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선 단 하나뿐입니다. 결국 조기 감축처럼 보이는 상한선을 앞에 내세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선형 경로인 하한선에만 규범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기후특위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도 우리 국민 77.9%가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이 되는 하한선을 선형으로 설정한 것은 현재 결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압도적인 민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온실가스 감축경로의 하한을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시킨 8조 제3항의 후단의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결정에 부합하도록 상향된 조기 감축경로를 법적 기준으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기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산업계의 주장 역시 검증해야 합니다.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업종별 생산 전망을 최근 추세로 조정하고 정부와 업계가 이미 제시했거나 추진 중인 감축 수단만 제대로 반영해도 산업과 냉매 부분에서 총 4170만t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2035년 하한선은 53%가 아니라 58.6%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이미 감축한 감축 수단조차 목표에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의지 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엄살에 떠밀려 제8조 2, 감축목표 설정 조항에 산업계 지원 문언을 끼워 넣는 것도 법의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산업계 지원은 이미 제3조(기본원칙), 제47조, 제8장 녹색성장에 차고 넘칩니다. 성격이 다른 감축목표 조항에까지 중복으로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안입

니다. 지금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과 어민, 취약계층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미룬 감축의 대가는 결국 미래세대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소위에서 조문 체계와 감축경로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소희 위원 현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이 법안이 그나마 빠르게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기후특위 위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기후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총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참여 없이는 어렵다는 점 역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이처럼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앞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역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메가 프로젝트의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40% 달성 목표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내용들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는 선형 감축과 오목형 감축, 그러니까 선제적인 감축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지금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너무 어렵다라는 절박한 현실의 목소리도 전한 바 있습니다. 여러 사항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국내 경쟁력을 챙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에서 요청했던 내용과 함께 선형 감축으로 하되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블록형으로 갈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아 달라고 요청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더 늦지 않게 가기 위해서 대승적인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책정해 놓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왜 그랬냐 하면 목표만 책정하고 실제로 가능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더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산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넣었다는 점, 이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서 이소영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우리도 목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26항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단말기 회의자료의 대안을 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33조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혜경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의 있으니까?

정혜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혜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저는 국회법 112조에 의거하여서 표결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정혜경 위원님이 반대토론에 이어서 표결을 요청하셨는데요, 그래서

먼저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면 위원님 반대의견은 이미 회의록에 충분히 기록이 되고 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간사님들 의견을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간사님.

○박지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의 토론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저희가 법안소위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토의할 기회를 많이 가졌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하신 것처럼 법안소위에서 양당,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위원님들까지 참여하셔서 합의로 처리를 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내용도 속기록에 다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의사 처리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소희 간사님.

○김소희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이미 반대의견은 속기록에 남겨져 있고요. 저희가 각 양당이 하나씩 양보를 해서 합의된 법안입니다. 그 부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표로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한번 더 정혜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국회법 112조에 보시면 ‘의장은 안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아니면 표결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표결을 처리하는 것이 이 규정에 의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를 했다고 해서 다수결 처리로 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혹시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현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기후특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특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여야가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소위의 숙의의 숙의를 거듭하고 해서 서로 합의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충분히 반대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보통의 경우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소위·위원회에서 다 합의 처리되고 그러는데.

정 위원님께서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게 속기록으로 남아 있고 이러니까 표결 없이 그냥 저희들은 합의로 처리했으면 좋겠고 조금 불편하시다면 표결이 아니고 의결하는 데 조금 기권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표결 처리 없이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시고 고심하셔서 이 안을 도출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번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체가 함께했던 것에서 반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표결 처리하자고 하는 이유는 현재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석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리고 소위에도 참석하지 못해서 발언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사적인 이 순간에 반대 표결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 제가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표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전에 일부 위원의 반대를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표시만 하고 가결시킨 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혜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누차 발언으로 반대의사는 충분히 피력하셨고 또 회의록에 이미 발언 속에서 게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립 표결·거수 표결하지 않고 이미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히셨으므로 사실상 표결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았나. 그래서 반대의사를 정혜경 위원님께서 사유는 이미 발언 속에 나왔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만 더 발언 기회를 달라고요? 발언하십시오.

○정혜경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일단 별건으로 해 볼게요.

하나는 이 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규정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시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수가 합의했다고 해서 표결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명백하게 제가 반대를 하고 표결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기존의 관행이다, 그래서 그것을 표결 처리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거라니깐요. 그러니까 저한테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가져와 주세요. 그 근거를 가져와 주시면 제가 합의를 해 드리겠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아니, 표결을 못할 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李憲昇 위원 표결한 것으로 하고 한 명 반대로 하면 되지.

○위원장 김정호 그 정도를 양해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하는 걸로 하지요.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李憲昇 위원 모양새는 안 좋지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모양새를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12조가 상임위에 적용되는

규정인지 아니면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는 전문위원이 확인을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본회의에 적용되는 조항이긴 한데 상임위에서도 본회의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회법 112조에 표결 방법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례들을 또 참고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의견을 속기록에 표현하는 걸로 명백히 해 가지고 표결 자체를 하지 않고 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憲昇 위원 관례대로 합시다, 선례가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정혜경 위원 선례와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호 또 제10조에는 ‘의장의 직무가 국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따라서 위원장이 표결에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혜경 위원 질서 유지하고 표결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호 의사를 정리하고, 이 대목에 의사가 명백하게 반대자가 정혜경 위원님으로 소수로 드러난 상황에서 굳이 표결 절차를 하지 않아도 회의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위원장의 직무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표결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송재봉 위원 표결하시지요.

○김원이 위원 헌법기관이 요구하는데 따라 줘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기권이 있습니까? 기권도 있네요.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위원 15인 중에서 찬성 열한 분,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활동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사항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경로를 법으로 정함으로서 2024년 8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감축경로의 법제화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에 대해 국내외 명확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탄소중립 이행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설립하고 기후대응기금 자금 조달수단으로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기후대응기금 역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 의결도 이번 기후특위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후위기 적응법을 통해 구체화된 적응 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 영향 및 취약성 분석, 기후보험 등 다양한 적응 정책을 바탕으로 해마다 가중되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기후위기 적응법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이라는 2개의 축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정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소희 간사님, 박지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경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비록 26년 2월 28일 시한을 넘겼지만 이제라도 위헌법률 개정의 의무를 완수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기후특위가 활동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17개월 동안 서로 다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치열한 논의 끝에 35년까지 53%에서 61% 범위형 감축목표의 합의를 이루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후위기특위는 탄소중립의 경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을 직접 듣기 위해 전문가들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대표단을 공모하여 집중적인 숙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의 78%가 미래의 감축 부담을 미루기보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는 기후특위가 합의한 선형 감축경로가 공론화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미래세대의 감축 부담을 떠넘겼다 그래서 하한선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8월 말까지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소관 업무는 상설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개정법에 따라 범위형 감축목표와 경로에 따라 부문별,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감축 활동으로 이어져 최소 목표는 반드시 이행하고 향후 과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서 최대 목표로 상향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처 담아내지 못한 시민사회의 의견과 우려까지도 계속 챙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기후특위 위원님들, 전문가들, 공론화 시민대표단 여러분께 새삼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강득구 김성희 김소희 김원이 김정호 박지혜 서범수 서왕진 송재봉 염태영
이소영 이종배 이주희 이현승 정혜경 조은희 조지연

○청가 위원(3인)

김용태 박정현 차지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장 김현영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 이경수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홍동곤

기후감축정책국장 김호철

임시회의록